

# 근로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조약 및 권리의 고찰(Ⅲ)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염 용 태

## 2)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근로자 신체검사제도가 만들어 짐과 때를 같이하여 일어난 1963년 산재보상보험제정이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효시이다. 그러나 ILO는 1925년에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재해보상에 관한 조약을 채택하였으며 특기할 것은 수습공의 포함을 명시한 점이다. 농업과 어업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약을 채택하여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배제한 점도 특징이다.

- (1) 이 조약은 모든 사업장 수습공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적용한다. (근로자 재해보상조약 : 17호, '25. 제1조)
- (2)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할증 보상한다. (동 조약 7조)
- (3) 직업병으로 근로불능 또는 사망자에게 산재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한다. (직업병 조약 : 18호, '25. 제1조)  
CF. 탄저병, 납, 수은대상
- (4) 농업근로자 강제 질병보험 제도 설정(사용자, 피보험자, 국가의 지원분담 규정). (농업근로자 질병보험조약 : 25호, '27. 제1조)
- (5) 1934년 근로자 직업병 보상에 관한 조약을 개정(42호)시에 직업병 종류에 납, 수은

중독과 탄저병 이외에 다음을 추가하였다.

(2조)

규폐증, 인중독, 규소중독, 벤졸 및 니트로, 아미노유도체 중독, 지방족 탄화수소의 「할로겐」유도체 중독, 라듐에 기인하는 병변, X-선에 기인하는 병변, 피부원발성 상피암.

- (6) 수습자를 포함한 모든 피고용자를 보호하고 부양자 사망시 수급자의 범주를 보호하여야 한다. (업무상 상해조약 : 121호, '64. 4조 1항)
- (7) 출퇴근시 사고를 포함한다. (동 조약 7조)
- (8) 가맹국은 피보호자에게 우발적 사고시 치료적 성격 및 예방적 성격의 의료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의료 및 질병급부조약 : 130호, '69. 8조)
- (9) 위의 피보호자는 모든 피고용인 및 그의 아내, 자녀 또는………(동 조약 10조)
- (10) 위에 언급된 의료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동 조약 13조)
  - a) 왕진을 포함한 일반의료
  - b) 병원 및 병원외에서의 전문의 진료
  - c) 처방에 의한 약품공급
  - d) 입원
  - e) 치과 진료
  - f) 재활
- (11) 장애, 노령 및 유족급여에 관한 조약. (128

## 2. 근로자 신체검사 및 보상에 관한 조약

한국에서 실제적인 산업보건 활동은 1956년 대한석탄공사에서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광부에서 규폐증환자를 색출하려는 시도였고, 발견된 환자에게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보상을 실시한 사실이다. 그후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고 그해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창설되어 우리나라 근로자의 신체검사가 체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ILO조약이 근로자 신체검사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1946년 연소자조약(77호)에서 시작된다. 즉 18세미만 연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용시 신검을 실시하고 건강여부를 판정한 후 작업배치에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근로자 신체검사와 관련된 조약내용을 발췌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1) 아동 및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엄격한 건강검사에 의하여 고용되어야 하며 작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공업적 사업에 고용할 수 없다. (연소자 건강검사 공업조약 : 77호, '46. 1조)
- (2) 고용시 18세가 될 때까지 의사의 감독하에 두어야 하며 1년 이내의 간격마다 건강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 조약 3조)
- (3) 건강상 위험이 있는 직업의 경우 21세까지 고용적격의 건강검사 및 정기적인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 조약 4조)
- (4) 방사선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취업전 또는 취업직후 의학적 검사를 받고, 그후에도 적당한 간격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리방사선방호조약 : 115호, '60. 12조)
- (5) 벤젠 취급자는 혈액검사를 포함한 취업전 건강진단과 정기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벤젠조약 : 136호, '71. 9조)
- (6) 사용자는 의학적 검사의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조치를 취하며 검사는 유자격자가 하

도록 해야 한다. (방사선방호조약 : 115호, '60. 13조)

- (7) 공해, 소음 및 진동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작업환경조약 : 148호, '77. 11조 1항)
- (8) 고용기간 그리고 고용계약이 끝난 후에도 건강상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이나 생물학적 검사 및 기타검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작업상 암조약 : 139호, '74. 5조)
- (9) 산업안전보건조약 권고(156호, '77. 16조)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a) 취업전의 건강진단
  - b) 적절한 간격의 정기건강진단
  - c)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 (10) 해당 관청은 사용자의 책임하에 실시되는 작업환경내의 공기오염, 소음 그리고 진동에 관한 측정의 종류, 회수 그리고 기타 조건을 정해야 한다. (작업환경에 관한 조약에 관한 권고 : 156호, '77. 2항)

## 3. 산업보건 관련조약 중 특기할 조문 발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72개 조약중 산업보건에 관련된 94개 조약에서 특별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조문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1) 전리방사선으로부터의 노동자의 방호에 관한 조약(방사선보호조약 : 제115호, '60.)

#### 제 6 조

1.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의 선원으로부터 신체가 받는 전리방사선 최대허용선량 및 체내에 섭취할 수 있는 방사선물질의 최대허용량은 제1부의 규정에 따라, 각 종류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 
2. 전기의 최대허용선량 및 최대허용량은 지식의 진보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제7조

1. 방사선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다음 근로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적당한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 a) 18세이상의 자  
b) 18세미만의 자

2. 16세미만의 어려한 근로자도 전리방사선을 포함하는 작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

적용된 수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전리방사선 및 방사선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피해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당한 감시가 근로자 및 작업장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 2) 벤젠의 유독위험에 대한 보호에 관한 조약 (벤조약 : 제136호, '71)

##### 제 1조

본 조약은 다음과 같은 물질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의 활용에 적용된다.

- a) 방향성의 탄화수소는 벤젠 C<sub>6</sub>H<sub>6</sub>, 이하 “벤젠”이라 칭함.  
b) 벤젠 함유량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품, 이하 “벤젠함유제품”이라 칭함.

##### 제 2조

1. 보다 독성이 적거나 또는 덜 유해한 대체 제품이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벤젠 또는 벤젠 함유제품 대신 사용되어야 한다.

##### 제 4조

1. 벤젠 및 벤젠 함유제품의 사용은 국내법이나 규칙으로 명시된 작업공정에서는 금지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금지조치는 적어도 용매 또는 희석제로 벤젠 또는 벤젠 함유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제 5조

근로자들은 벤젠 또는 벤젠 함유제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작업상

의 위생 및 기술적인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6조

1. 벤젠 또는 벤젠 함유제품이 제조, 취급 또는 사용되는 장소에서는 벤젠기포가 작업장의 공기속으로 증발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2. 근로자들이 벤젠 또는 벤젠 함유제품에 노출되는 경우, 고용주는 작업장 공기 속의 벤젠농도가 관할청이 규정하는 최대허용기준치인 1입방미터당 80미리그램(80mg/m<sup>3</sup>)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11조

1. 임신중이거나 수유중인 것으로 진단된 여성근로자는 벤젠 또는 벤젠 함유제품에 노출되는 작업에 고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벤젠 또는 벤젠 함유제품에 노출되는 작업에 고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3) 발암성물질 및 약품에 기인되는 작업상 위험예방 및 통제에 관한 조약(작업상 암조약 : 제139호, '74)

#### 제 1조

1. 본 조약을 비준하는 각 가맹국은 작업상 노출이 금지되거나 또는 승인이나 통제되어야 하는 발암성물질 및 약품, 그리고 본 조약의 기타 규정이 적용되는 물질 및 약품을 정기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 2조

1. 가맹국은 근로자가 작업도중 노출될 수도 있는 발암성 물질 및 약품을 비발암성 물질이나 약품 또는 보다 덜 유해한 물질이나 약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발암성물질 또는 약품에 노출되는 근로자 수와 그와 같은 노출의 지속기간 및 농도는 안전성과 부합하는 최소의 기준까지 줄여야 한다.

#### 제 4조

가맹국은 발암성 물질이나 약품에 노출되었

거나 또는 노출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이 관련된 위험 및 취하여야 할 조처들에 관한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

가맹국은 근로자들에게 고용기간 동안 그리고 고용계약이 끝난 후에도 작업상의 위험과 관련된 노출정도를 측정하고 건강상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이나 생물학적 검사 및 기타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공해, 소음 및 진동에 기인하는 작업환경에 있어서의 작업상의 위험에 대한 근로자보호에 관한 조약(작업환경조약 : 제148호, '77.)

#### 제5조

- 본 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소관당국은 가장 대표적인 관련된 고용주 단체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고용주 및 근로자 대표는 규정된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규정고안에 참여하여야 한다.
- 사업고용주 대표와 근로자 대표는 본 조약에 의거 규정된 조치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소관당국의 일반적인 지시에 비추어 자신의 업무수행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감독관을 수행 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 제6조

- 고용주는 규정된 조처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제7조

- 근로자들은 공해, 소음 및 진동에 기인하는 작업환경에 있어서의 직업상의 위험을 방지 및 통제하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작업환경내의 공해, 소음 및 진동에 기인하는 직업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보장받기 위하여 소관당국에 방안을 제안하고, 정보 및 훈련을

받고 또한 청원 할 권리를 갖는다.

#### 제8조

- 소관당국은 작업환경내 공해 및 진동에 노출되는 위험을 정하는 기준을 세워야 하며, 적절한 경우,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노출한계를 규정하여야 한다.
- 기준을 설정하고 노출한계를 결정할 때 소관당국은 가장 대표적인 관련된 고용주 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지정한 기술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기준 및 노출한계는 사업장내의 여러가지 해로운 요인에 동시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작업상의 위험 증가를 최대한 고려하고, 현재의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정보 및 자료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설정, 보완 및 수정되어야 한다.

#### 제9조

기술적인 조처를 새로운 공장 또는 공정의 설계 또는 설치시 적용하거나 또는 기준의 공정에 적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충적인 조작 조처를 한다.

#### 제11조

- 작업환경내 공해,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한 작업상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또는 노출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소관당국이 정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두고 검사하여야 한다.

5) 산업안전 및 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조약  
(산업안전 및 보건조약 : 제155호, '81.)

#### 제11조

관할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가 점진적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위험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기업의 설계, 운영 및 배치, 작업시작,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사항 및 목적 변경, 작업시 사용되는 기계방비의 안전성 및 관할청이 규정한 절차 적용등에 적용되는 조건 결정.
- 산업재해 및 산업병의 통고 절차를 고용주

- 또는 적절한 경우, 보험기관이나 기타 직접 관련된 기관이 수립하고 실시하며 또는 산업재해 및 산업병에 대한 연차통계 작성.
3. 국내여건 및 가능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건강 위험과 관련된 화학, 생물학적인 약품을 검사하는 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
- 제13조**
-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긴급하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작업환경으로부터 피신한 근로자는 그 결과 국내여건과 관행에 따라 부당한 처리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 제19조**
- 기업차원에서 다음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자신의 고용주에게 부과된 의무를 고용주가 잘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2. 기업내 근로자 대표들은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고용주와 노력한다.
  3. 기업의 근로자와 근로자대표들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4.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그리고 경우에 따라 기업내의 대표적인 단체는 산업안전과 보건문제에 관하여 고용주에게 질의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상호협약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기술고문을 초청할 수 있다.
  5. 근로자는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긴급하고도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큼 정당한 근거가 있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즉시 자신의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구제조치를 취할 때까지 고용주는 계속하여 그러한 위험이 남아있는 작업현장에 복귀하라고 근로자들에게 요구할 수 없다.
  - 6) 석면사용시 안전에 관한 조약(석면조약 : 제162호, '86.)
- 제2조**
1. 본 조약에서 “석면”이란 크리솔라이트(chrysolite : 백색석면)같은 사문석 계통과 엑티널라이트(actinolite), 아모사이트(amosite : 갈색석면/커밍턴나이트-구루서라이트(cummingtonite-grunerite)), 앤소필라이트(anthophyllite), 크로우씨더라이트(crocidolite : 청색석면), 트레몰라이트(tremolite)나 이것들의 한 두가지가 섞인 물질같은 각섬석 계통의 암반형성 광물질에 속하는 광물성 규산의 섬유상의 형태를 말한다.
2. “호흡성 석면질 섬유”란 지름이 3마이크로미터( $\mu\text{m}$ )보다 작고 세로-직경의 비율이 3:1보다 큰 석면질 섬유를 말한다. 5마이크로미터( $\mu\text{m}$ )보다 큰 섬유만 측정상 고려되어야 한다.
- 제11조**
- 크로우씨더라이트(crocidolite)나 이러한 섬유질을 내포한 생산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제12조**
- 어떤 형태의 석면일지라도 그것의 분무는 금지된다.
- 제15조**
1. 노출한계나 기타 노출기준은 고정돼야 하며, 기술과 과학의 진보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 시대감각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
  2. 석면먼지가 공중으로 뜨는 것을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만 한다.
- 제17조**
1. 가루로 되기 쉬운 석면을 내포하고 있는 공장이나 건물구조를 파괴하는 행위와 석면가루를 일게 하면서 건물이나 건축구조로부터 석면을 제거하는 행위는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당해관청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또 그러한 일을 떠맡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나 계약자들에 의해서만 행하여질 수 있다.
  2. 사용자나 계약자는 파괴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취해질 조처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작업계획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데, 다음의 조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근로자들에게 모든 필요한 보호책을 강구할 것.
- 2) 석면먼지가 공중에 뜨는 것을 제한 할 것.
- 3) 이 조약의 제19조에 따라 석면을 내포한 폐기물의 처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 제18조

1. 근로자들의 옷이 석면먼지로 더럽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적절한 작업복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그 작업복을 작업장 밖으로 착용하고 나갈 순 없다.
2. 사용된 작업복과 특수보호복을 다루고 세척하는 것은, 당해관청이 요구하는 대로, 석면먼지가 일지 않도록 통제된 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
3. 국가법규는 작업복과 특수보호복 그리고

개인적 보호장비를 집으로 가져오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작업복, 특수보호복 그리고 개인용 보호장비의 세척, 유지 및 보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5. 사용자는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씻고 목욕하고 또는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제19조

1. 국가의 법률이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는 석면을 내포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관련 근로자들에게나 혹은 공장근처의 주민들에게 건강상 위험을 야기시키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 작업장으로부터 확산되는 석면먼지에 의해 전반적인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들이 당해관청이나 사용자들에 의해 강구되어야 한다.

## 국제학회 안내

### • 직업관련성 골격근 장해예방에 관한 국제회의

####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on Prevention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PREMUS)

· 일 시 : 1992. 5. 12 - 14

· 장 소 : Stockholm, 스웨덴

### • 제6차 수지진동에 관한 국제회의

####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nd-Arm Vibration

· 일 시 : 1992. 5. 19 - 22

· 장 소 : Bonn, 독일

### • 제8차 직업성폐질환에 관한 국제회의

####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ccupational Lung Disease

· 일 시 : 1992. 9. 14 - 17

· 장 소 : prague, 체코슬라바키아

### • 20차 의화학회의

#### 20th Medicem Congress

· 일 시 : 1992. 10. 6 - 9

· 장 소 : London, 영국